근 로 계 약 서 (예시)

(제11조 관련)

국립정신건강센터장(이하 “사용자”이라 한다)과 (공무직, 기간제, 단시간)근로자 ○○○(이하 “근로자”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자의 인적사항

성 명	성 별	연 령	생년월일	최초계약일
현 주 소			전화번호(핸드폰)	비 고

2.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

○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(공무직, 기간제, 단시간)근로자로서, 「근로기준법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을 적용한다.

3. 근로계약기간 : ○○○○. ○. ○ ~ ○○○○. ○. ○

○ 최초계약 : ○○○○. ○. ○ ~ ○○○○. ○. ○

○ 연장계약 : ○○○○. ○. ○ ~ ○○○○. ○. ○

4. 근로시간 및 휴게

○ 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(1일 시간)

○ 휴게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

5.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

○ 근무형태(직종) :

○ 근무장소 및 부서 :

○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:

6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단시간 근로자에 한함)

1) 근로일 :

2) 근로일별 근로시간 :

7. 휴일 : 주 요일

8. 휴가 :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9. 임금

○ 시간(일, 주, 월)급 : 원

○ 지급일 : 매 일 지급한다(단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).

○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(통장번호 : _____).

10. 근로계약의 해지(해고) 사유에 관한 사항

○ 업무수행능력 부족, 업무태만,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, 고의·중과실로 손해초래, 업무량 변화·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○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.

11. 퇴직에 관한 사항

○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()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.

○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,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

○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
12.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○○○○. ○. ○

사용자 : 국립정신건강센터장 ○ ○ ○(인)

근로자 : ○ ○ ○(인)